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94 발의연월일: 2022. 9. 28.

발 의 자:서정숙・구자근・강기윤

김영식 • 박대수 • 김용판

金炳旭・임이자・최연숙

백종헌 · 최영희 · 이종성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,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4 및 제18조제7항ㆍ제8항 신설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4(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)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 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⑦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를 할 수 있으며, 제3호와 제4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⑧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 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7항 및
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
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6조의4(교육활동 침해행위의
	신고의무) ① 교육활동 침해행
	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
	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
	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	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
	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
	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
	속 학교의 장은 이를 제19조제
	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
	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	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
한 조치 등) ① ~ ⑥ (생 략)	한 조치 등) ① ~ ⑥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
	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
	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
	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3호 및
	제4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

<신 설>

⑦ ~ ⑨ (생 략)

제3호와 제4호의 조치는 동시 에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 인을 받아야 한다.

⑧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

⑨ ~ ⑪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